



# 서울아산병원 직종별 인력 현황

## 1. 직종별 인력 현황 (2019. 4. 16부)

구분	의사직	일반직	계	비고
인원	1,731	6,788	8,519	

2. 의사직 : 1,731명

3. 일반직 : 6,788명

구분	정규직									기간직	계
	부장이상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직무 급제	기술/ 기능	소계		
간호직	24	209	392	859	979	1,109	207		3,779	206	3,985
약무직	2	4				1	166		173	5	178
보건직	10	121	168	179	185	87	10		760	211	971
사무직	32	100	112	99	106	96	9		554	92	646
연구직		1	5	3	9		27		45	93	138
기술직								103	103	38	141
기능직								474	474	255	729
계	68	435	677	1,140	1,279	1,293	419	577	5,888	900	6,788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서울아산병원	소재지	
대표자	이상종도	업종(주생산품)	보건업
근로자수	7,404명	전화번호	

## < 1노동조합 >

- 명칭 : 전국보건의료노조서울아산지부
- 임단협 : 2019.5.31.(2019.9.30.)
- 대표자 : 이경민
- 상급단체 : 민주노총
- 설립일자 : 1998. 2. 7.
- 조합원수 : 591명 (간호사: 명)

## < 2노동조합 >

- 명칭 :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 임단협 : 미체결
- 대표자 : 양구용
- 상급단체 : 한국노총
- 설립일자 : 2018. 6. 5.
- 조합원수 : 15명 (간호사: 명)

## 2. 근로자 현황 (의사 : 1,17310명, 간호 : 3,9850명, 양구용 : 1명, [점검일 현재])

근로형태별 (단위: 명)	구분	계	주간	2교대	3교대	4교대	강단	격일제	탄력	선택	재량
		남									
	여										
유형별 (단위: 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도급(용역)	일용	특수고용	기타
	남										
	여										

## 3. 선정사유

- ✓ 30일 미만 신청 X
- ✓ 30일 이상 신청 ( ) ⇒ 30일 미만 신청 X
- ✓ 취업사건. 미신청 수당 (1년) EMR. (medical)
- ✓ 표준근로 사전신청 필요.

## 감 독 점 검 표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근로시간 과 휴식	★50조	근로시간		
	★53조	연장근로 제한		
	★54조	휴게		
	★55조	휴일		
	★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57조	보상 휴가제		
기 타				

※ 점검결과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기재

2019. 4. 17

점검자: 소속

직 근로감독관 성명 이병욱 (인)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사용자: 소속

*서영민*

직 경영자성명 성명

*김유성* (인)

근로자: 소속

직 성명

<b>근로감독결과보고서(1차)</b> (수시감독)	팀장	과장			결 재
	이병욱	김태령	전결 2019. 5. 2.		

○ 사업체 현황												비공개 (5)	2019.04.30
사업장명	서울아산병원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인사팀 (풍납동) 388-1 인사팀()				전화번호	02-3010-7490			
대표자	이상도			업종	일반병원				설립일자				
근로형태별 근로자수 (단위:명)	구분	계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4교대 근무	감시·단 속적근무	격일제 근무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재량 근로		
	남	3519	3519										
	여	5000	5000										
유형별 근로자수 (단위: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 간제	파견	도급 (용역)	일용	특수고용 형태	기타		
	남												
	여												
노동조합	명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 협약만료일					
	전국보건의료노조서울아산지부			이경민	591	1998.02.07	2년	2019.09.30 2019.05.31					
감독일시	2019.04.19 (5일간)			근로감독관	이병욱 등 5명 (인)							(인)	

○ 감독에 있어 행한 지도내용

상기 사업장 대하여 수시 부분감독을 실시한 바,

-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 30분 미부여(디지털포렌식분석팀 수사를 통하여 추후 판단)
-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미만에 대하여 절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산정 금액은 디지털포렌식분석팀 수사를 통하여 추후 산출예정)
- 업무 수행을 위한 조기 출근인 경우 사전 및 사후 신청을 통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붙임 :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보고-1차

○ 종합의견

1995. 6. 30. 노사합의한 최소 단위를 30분 단위로 하고, 수당 계산시 30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한 노사합의내용은 자율개선 지도(미시정시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예정)하고, 조출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 이후 범위반 내용 2차 시정지시 예정

첨 부 : 감독점검표 1부.

#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보고

## 1. 사업장 감독 추진배경

- ...
- ...

## 2. 간호사 근무현황

구분	직책별		근무형태별		소계 (명)
	직책	인원(명)	근무형태	인원(명)	
총괄부서	부원장	1	주간근무	3	3
	수석부장	2		0	
일반병동	팀장	8	주간근무	162	1,619
	수간호사	53	2교대	120	
	간호사	1,558	3교대	1,311	
			야간전담	26	
중환자실	팀장	1	주간근무	39	487
	수간호사	13	2교대	33	
	간호사	473	3교대	384	
			야간전담	31	
의 래	팀장	2	주간근무	418	418
	수간호사	13	2교대	0	
	간호사	403	3교대	0	
			야간전담	0	
수 술 실	팀장	1	주간근무	164	449
	수간호사	14	2교대	28	
	간호사	434	3교대	251	
			야간전담	6	
응급실, 투석실, 분만장, 정맥지원, 긴급진료실, 신생아실, 간호 교육행정팀	팀장	1	주간근무	27	321
	수간호사	10	2교대	72	
	간호사	310	3교대	214	
			야간전담	8	
기 타 (간호부문의 건진 센터, 감염관리팀, 행정부서 등)	팀장	15	주간근무	688	688
	수간호사	49			
	간호사	634			
총 계					3,297

## 2. 점검 내용

가. 휴게시간 미부여 :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근무 종료 시간까지 계속 근무함

※ 간호사 근무시간 편성표(3개조)

D: 06:30~15:30(9H), E: 14:30~23:30(9H), N: 22:30~07:30(9H)

- 조별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휴게 사용, 30분은 조기 퇴근  
(예시: D의 경우 15:00 퇴근)

- 실 근무 시간 : 8시간

### ◆ 확인 내용

① 간호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휴게시간(30분)을 미사용 확인

☞ (월 1회 이상 많게는 주 1~2회 정도 환자 응급상황으로 휴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설문 및 면담조사시 확인됨)

② 근로자 휴게시간 미사용수당 청구하지 아니하여 휴게시간 미사용수당 지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EMR 사용기록이 근무시간 중 쉽없이 계속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식당 이용기록이 체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미사용한 것으로 확인

☞ (휴게시간 사용여부는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추후 판단 예정)

③ 휴게시간(30분)을 사용하였으나, 충분히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감독관의 근무 간호사의 식당이용 동행조사를 통하여 확인

☞ (동행조사를 통하여 식당 이동시간, 식사시간, 커피타임, 양치질 등으로 30분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 퇴근시간에 환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30분 미만 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199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1995. 6. 30.)

o 시간외수당 지급: 수당 계산은 1시간을 최초의 최소단위로 하고 1시간이상 부터 발생하는 시간은 30분단위로 계산하되 30분미만은 버림

- 2018. 3. 15. 협조전(일반직 시간외근무 신청기준 변경 안내)을 통해 최소 단위를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

#### ◆ 확인 내용

① 간호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30분 미만 시간분에 대해서 절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 (단체교섭합의서를 근거로 연장근로시간 30분 미만 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회사측에서도 동내용을 인정함)

② 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출하여 절사된 30분미만 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확인

☞ (산정 금액은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추후 산정 예정)

③ 조출근무자의 경우 조출사유가 과도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전 및 사후 연장근로 신청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행정지도 예정

☞ (현재, 조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디지털포렌식분석팀에서  
자료 분석이 늦어짐에 따라, 상기 『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확인내용 중 ①항 과 ③항에 대해서 자율개선 권고 및  
행정지도 예정임

<b>근로감독결과보고서(2차)</b> (수시감독)	팀장	과장		결
	이병욱	김태령	전결 2019. 6. 14.	재

비공개(5) 2019.06.14

○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서울아산병원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인사팀 (풍납동) 388-1 인사팀()				전화번호	02-3010-7490		
대표자	이상도			업종	일반병원				설립일자			
근로형태별 근로자수 (단위:명)	구분	계	주간근무	2교대근무	3교대근무	4교대근무	감시·단속직근무	격일제근무	탄력적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	재량근로	
	남	3519	3519									
	여	5000	5000									
유형별 근로자수 (단위: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 간제	파견	도급 (용역)	일용	특수고용 형태	기타	
	남											
	여											
노동조합	명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 협약만료일				
							년					
감독일시	2019.04.19 (1일간)			근로감독관	이병욱 등 5명 (인)							

○ 감독에 있어 행한 지도내용

상기 사업장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4. 19.까지 수시 부분감독을 실시하고, 2019. 6. 2. 1차 근로감독결과보고 이후, 포렌식 수사자료가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보고" 와 같이 2차 보고합니다.

붙임 :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보고-최종

○ 종합의견

상기와 동일함

첨 부: 감독점검표 1부.

#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보고

## 1. 사업장 감독 추진배경

- [Faded text]
  - [Faded text]
- 필요성

## 2. 간호사 근무현황

구분	직책별		근무형태별		소계 (명)
	직책	인원(명)	근무형태	인원(명)	
총괄부서	부원장	1	주간근무	3	3
	수석부장	2		0	
일반병동	팀장	8	주간근무	162	1,619
	수간호사	53	2교대	120	
	간호사	1,558	3교대	1,311	
			야간전담	26	
중환자실	팀장	1	주간근무	39	487
	수간호사	13	2교대	33	
	간호사	473	3교대	384	
			야간전담	31	
의 래	팀장	2	주간근무	418	418
	수간호사	13	2교대	0	
	간호사	403	3교대	0	
			야간전담	0	
수술실	팀장	1	주간근무	164	449
	수간호사	14	2교대	28	
	간호사	434	3교대	251	
			야간전담	6	
응급실, 투석실, 분만장, 정맥지원, 긴급진료실, 신생아실, 간호 교육행정팀	팀장	1	주간근무	27	321
	수간호사	10	2교대	72	
	간호사	310	3교대	214	
			야간전담	8	
기 타 (간호부문의 건진 센터, 감염관리팀, 행정부서 등)	팀장	15	주간근무	688	688
	수간호사	49			
	간호사	634			
총 계					3,297

## 2. 점검 내용

가. 휴게시간 미부여 :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근무 종료 시간까지 계속 근무함

※ 간호사 근무시간 편성표(3개조)

D: 06:30~15:30(9H), E: 14:30~23:30(9H), N: 22:30~07:30(9H)

- 조별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휴게 사용, 30분은 조기 퇴근

(예시: D의 경우 15:00 퇴근)

- 실 근무 시간 : 8시간

### ◆ 확인 내용

① 간호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휴게시간(30분)을 미사용 확인  
☞ (월 1회 이상 많게는 주 1~2회 정도 환자 응급상황으로 휴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설문 및 면담조사시 확인됨)

② 근로자 휴게시간 미사용수당 청구하지 아니하여 휴게시간 미사용수당 지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EMR 사용기록이 근무시간 중 쉽없이 계속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식당 이용기록이 체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미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자 포렌식 수사 의뢰

☞ EMR 사용기록에 대한 포렌식 수사관련 : 서울청 광역감독과 김광음감독관은 EMR 사용기록은 on, off기록은 있으나, 기록에 대한 작성시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근무시간 동안 휴게 미부여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는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줌

③ 휴게시간(30분)을 사용하였으나, 충분히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감독관의 근무 간호사의 식당이용 동행조사를 통하여 확인  
☞ (동행조사를 통하여 식당 이동시간, 식사시간, 커피타임, 양치질 등으로 30분 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 결론 : 설문 및 면담을 통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병원측에서도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간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62조(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 하여 시정지시 예정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 퇴근시간에 환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30분 미만 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199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1995. 6. 30.)

o 시간외수당 지급: 수당 계산은 1시간을 최초의 최소단위로 하고 1시간이상 부터 발생하는 시간은 30분단위로 계산하되 30분미만은 버림  
 - 2018. 3. 15. 협조전(일반직 시간외근무 신청기준 변경 안내)을 통해 최소 단위를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

### ◆ 확인 내용

- ① 간호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30분 미만 시간분에 대해서 절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 (단체교섭합의서를 근거로 연장근로시간 30분 미만 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회사측에서도 동내용을 인정함)
- ② 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출하여 절사된 30분미만 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확인차 포렌식 수사 의뢰

☞ EMR 사용기록에 대한 포렌식 수사관련 : 서울청 광역감독과 김광음감독관은 EMR사용기록은 on, off기록은 있으나, 기록에 대한 작성시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후임근무자가 전임근무자의 EMR사용기록을 계속 사용하여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줌

③ 조출근무자의 경우 조출사유가 과도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전 및 사후 연장근로 신청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행정지도 예정

☞ 현재, 조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임

◆ 결론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확인내용 중 ①항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자율개선 권고하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예정, ③항에 대해서는 조기출근 이유가 타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사전, 사후에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지급될수 있도록 행정지도 예정

# 시 정 지 시 서

결 재	팀장	과장		
	이병욱	김태령	전결 2019. 6. 17.	

비공개(5)

우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 가락동 78 아이티 벤처타워) 전화: 02-2142-8818 전송: 02-6915-43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이병욱	lbuk12@korea.kr	

문 서 번 호	근로개선지도1과-12635		
---------	----------------	--	--

사 업 장 명	서울아산병원	대표자	이상도
---------	--------	-----	-----

소 재 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인사팀 (풍납동)(388-1 인사팀)		
-------	--	--	--

위반법조항	시 정 지 시 내 용	시정기한
-------	-------------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p>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병동환자 응급상황 발생으로 간호사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개선계획서를 작성·시행하고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람</p> <p><b>※ 시정결과 제출 후 현장 출장을 통해 시정결과 확인 예정</b></p>	2019.07.13
----------------	--	------------

근로기준법 제56조	<p>병동 간호사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보다 조기출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기출근한 경우, 사전·사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동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p>	행정 지도
------------	--	-------

2019. 4. 19. 실시한 지방관서 자체(수시) 결과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정 지시하니, 이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고, 시정 결과와 게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9. 9. 13.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